



(2) 전입·전출요구 및 동의(임용령 시행규칙 제21조)

- ① 소방기관의 장의 동의 :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려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전입·전출동의요구서에 따라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② 전입·전출 동의회보서에 의한 회보 : 전입·전출동의요구를 받은 소속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 전출·전입동의회보서에 의하여 15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하며, 동의하는 경우에는 부임일자 등을 고려하여 발령예정 일자를 서로 같은 일자가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3) 교류임용의 제한(임용령 제29조 제6항)

소방청장은 소방인력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과 시·도 간 및 시·도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제한할 수 있다.

(4) 그 밖의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임용령 제29조 제7항)

소방공무원 시·도간 인사교류 규정(소방청훈령 제298호, 2022.12.29.)

제3조(인사교류 시기)

- ① 소방청장은 시·도 소속 소방청 이하 소방공무원의 고충해소 및 원활한 인사운영 등을 위하여 반기별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 외에 시·도 간 협의를 통해 수시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인사교류 원칙)

- ① 인사교류는 동일계급간 1:1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도간 협의를 통해 일방적인 전·출입 또는 상이한 계급간 교류를 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원활한 교류를 위해 3개 이상 시·도 또는 기관간에 교차교류 방식으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교류 대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교류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
3.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보의 제한을 받는 자
4.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교류가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인사교류순위명부의 작성 등)

- ① 시·도지사는 소속 소방청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계급별 인사교류순위명부(이하 "순위명부"라 한다.)를 연2회 3월말과 9월말을 기준으로 작성·공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순위명부 작성을 위하여 인사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인사교류순위명부의 작성 등)

- ① 시·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순위명부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도의 순위명부에 따라 인사교류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소방령 및 소방경 계급의 소방공무원 :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 소방위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 직장훈련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시행규칙 제19조 제6항 제1호).
 - ㉠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 / 2
 - ㉡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 / 2
 - ㉢ ㉠ 및 ㉡를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 / 2

직장훈련성적(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 소방청 예규 제58호(시행 21.12.29))

제3조(직장훈련성적의 평정항목)

- ① 직장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관서(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항공대, 소방정대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평정단위기간별로 연2회 실시한다.
- ② 평정항목은 전술훈련평가와 직장교육평가로 구분하되 각 2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교육평가를 4점 만점으로 할 수 있다.
 - 1.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2. 질병, 부상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3. 파견·교육·기타 공무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4.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 중 이거나 공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 병역휴직, 특별휴가 중인 사람
 - 5. 휴직(제4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
 -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③ 평정항목을 달리하는 기관·부서로의 전보 시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부서에서 평가한 직장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다만, 전술훈련평가(업무수행역량 등 평가 포함)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에서 평정을 할 수 있으며, 평정 직전 전보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평균점으로 평정점을 부여한다.

제4조(전술훈련평가)

- ① 전술훈련평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또는 개인별 전술 및 기술 능력에 대하여 평가한다.
- ② 전술훈련평가는 소방관서별로 전술훈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별표 10에 따라 등급별로 평정점을 부여한다.

- ③ 119안전센터, 구조대, 항공대 등 각 부서의 장에 대한 전술훈련평가는 소속직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④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0점으로 평정한다.
- ⑤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의 전술훈련평가는 직장교육에 대한 시험 등의 평가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⑥ 소방관서장은 전술훈련평가 시 평가분야에 관련된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평가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교육평가)

- ① 직장교육평가는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각종 교육·회의·행사 등에 참석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 ② 제1항의 평가는 교육 등에 참석한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1. 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부서 근무자 : 2점 × 교육 등 참석횟수/교육 등 실시 횟수
 - 2.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 근무자 : 4점 × 교육 등 참석횟수/교육 등 실시 횟수
-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근무자에 대해 업무수행 능력, 직장훈련을 위한 교관으로서의 자질(소방경 계급에 한함), 직장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여 직장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3조제2항제1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장교육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 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정한다.
 - 2.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정하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교육등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등에 참석한 것으로 하여 평정한다.
 - 3.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정하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교육등에 참석하지 못하여 평정점이 2.8점 미만인 경우에는 2.8점으로 평정한다.
- ⑤ 소방관서장은 연가·병가·공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와 직장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평가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체력검정성적 : 소방공무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체력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정점을 말하며,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시행규칙 제15조)
 - ㉠ 소방령 및 소방경 계급의 소방공무원 :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3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 소방위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 ㉠ 명부작성 기준일 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 ㉡ 명부작성 기준일 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 ㉢ ㉠ 및 ㉡를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